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6. 20 선고 2017나6123 판결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6. 20 선고 2017나6123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4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원고, 항소인2.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2. C

3. D

변론 종결 2018. 5. 16.

판결 선고 2018. 6. 20.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34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6,99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A이, 나머지 4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우즈오토코리아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3,384,455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3,384,455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8쪽 제14행의 "갑 제7, 21, 22호증의 기재"를 "갑 7,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제1, 2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다음과 같이 합계 483,384,455원(= 154,017,255원 + 30,131,200원 + 40,000,000원 + 216,745,920원 + 42,490,080원)이다.

1) 제1부품 9,500개, 제2부품 12,393개(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의 각 교체품 납품에 소요된 비용 154,017,255원[= 개당 단가 7,035원 × (9,500 + 12,393)개]

제1부품	7,922	0	1,578	9,500
제2부품	7,922	2,943	1,528	12,393
합계	15,844	2,943	3,106	21,893

2) 교체품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용 30,131,200원

3) 교체품의 항공 및 내륙 운송비 40,000,000원(= 이미 교체된 제1, 2부품 합계 15,844개에 대한 항공 운송비 26,286,660원 + 내륙 운송비 1,867,000원 + 장래 교체 대상인 부품 3,106개에 대한 항공 및 내륙 운송비 11,846,340원)

4) 부품 1개당 미화 12달러(환율 1,140원/\$ 기준 13,680원)로 계산한 교체비용으로서, 이미 교체한 제1, 2부품 합계 15,844개에 대한 교체비용 216,745,920원 및 장차 교체할 부품 합계 3,106개에 대한 교체비용 42,490,080원

나. 원고 A의 손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원고 A이 원고 회사든 누구에게든 제1, 2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한편 갑 32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6. 6. 3.부터 2016. 7. 19.까지 제1, 2부품 각 7,922개를 F로부터 납품받아 GM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8.까지 F에 물품대금 88,710,556원(제1부품은 개당 5,800원, 제2부품은 개당 5,398원), 금형 제작비용 30,131,200원, 항공운송료 26,286,660원, F 공장으로부터 공항까지의 국내 운송료 1,86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는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미 위 금원 이상의 배상을 원고 A에게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금원을 상한으로 하여 그 중 통상의 손해 내지 원고 A이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인정되는 금액 상당은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이고, 따라서 원고 A은 그와 같이 부담하게 될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다. 손해의 범위

1) 교체품 대금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공급한 제1, 2부품이 GM우즈베키스탄에서 완성차 조립에 사용되는데, 만약 제1, 2부품에 자동차 조립에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조립 공정의 중단이나 완성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GM우즈베키스탄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갑 16, 18, 19, 37,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제1, 2부품에 누유와 같은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 회사가 F에 지급한 단가인 5,800원(제1부품) 또는 5,398원(제2부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은 GM우즈베키스탄에 이미 납품된 제1부품의 교체품, 제2부품의 교체품 각 7,922개 합계 88,710,556원[= (5,800원 + 5,398원) x 7,922개]에 한한다. 따라서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다.

- ① 제1, 2부품이 들어가는 넥시아(Nexia) 차량은 1990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매우 오래된 모델이고, 국내에서는 예전에 단종되었으며, GM우즈베키스탄도 2016. 8. 4.경 단산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에 들어가는 제1, 2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므로(F도 이미 위 차량 부품의 생산라인을 폐기함), 만일 위 부품에 하자가 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보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에서 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생산설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 ② 새로이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들고, 앞으로 이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다면 채산성에 문제가 없으나 곧 단종되는 등의 이유로 한정된 생산만을 하고 더구나 이를 긴급하게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제조업의 당연한 특성이다.
- ③ 위와 같은 사정은 동종의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도 처음에는 제1, 2부품의 교체품 생산을 거절하였으나, GM코리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마지못해 제1, 2부품의 교체품 각 7,922개만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 ⑤ 원고 회사가 F에 지급한 단가인 5,800원(제1부품) 또는 5,398원(제2부품)은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단가인 3,586원(제1부품) 또는 3,905원(제2부품)의 약 1.5배 정도가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⑥ 제1, 2부품의 누유가 발견된 후, 피고 회사는 2016. 4. 27.경 크림프(crimp) 공정 과정에서 부품 위치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부품 치수의 오차로 인하여 불량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GM우즈베키스탄 측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 회사가 제출한 교체품도 공차(公差) 이상의 치수 오차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그 이후로도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계속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GM 우즈베키스탄 측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하자를 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6. 5. 10.경 원고 회사에 F로부터 교체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1, 2부품을 생산하던 세현피앤에이치는 2016. 6. 13.경부터 파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1) 원고 A이 주장하는 교체품 수량 중 이미 납품된 제1, 2부품 각 7,922개를 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원고들이 비용을 들여 교체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A이 교체품 공급 요구나 공급금액 상당의 배상청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부품대금 상당의 채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A은 제1, 2부품의 교체품 단가가 사급품인 니플과 플레어너트 가액을 포함하여 각 7,035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 3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F는 2016. 5. 10. 원고 회사에 제1부품의 단가를 6,800원, 제2부품의 단가를 6,798원으로 각 제안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6. 5. 11. 이를 수락하여 제1, 2부품의 제작을 요청한 사실, 원고 회사도 2016. 6. 15. 제1, 2부품의 단가를 개당 6,8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회사가 F와 최초 합의된 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사급품을 구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 회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회사는, 제1, 2부품 중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포함된 로트의 전체 수량이 제1부품의

경우 9,500개, 제2부품의 경우 12,393개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다량의 부품을 일일이 검수하여 정상 제품과 하자 있는 제품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검수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제1, 2부품의 단부에 부착된 금속제 크림프의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불량 여부를 용이하게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누유검사를 하면 제1, 2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납품단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부품에서 누유가 발생한 원인으로 이를 제조하는 금형이 마모된 점을 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마모된 금형에서는 동일하게 생산된 다른 부품에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불량품이 포함된 로트에 속한 제1, 2부품 전체가 하자 있는 부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회사는 F가 납품한 제1부품 중 2,952개는 원고 A이 실제로 발주하지 않은 수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포함된 제1부품 로트의 전체 수량이 9,500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미 납품된 9,500개 중 7,922개를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운송비 가) 받아들이는 부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 2부품의 경우 완성차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교체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과 피고 회사도 모두 그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설령 피고 회사가 교체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공 수송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원고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항공운송료 및 공항까지의 국내 운송료 합계 28,153,660원(= 26,286,660원 + 1,867,000원)은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원고 A은 이에 더하여 장차 교체하여야 할 제1, 2부품 도합 3,106개에 대한 운송비

11,846,340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는 원고들 중 누구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지출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현재까지도 위 부품에 대한 운송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바 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운송을 통한 신속한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형 제작비용 갑 30,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F를 대신하여 제1, 2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비용 30,131,200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공급한 제1, 2부품에 하자가 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보수하지 못하였으며, 제1, 2부품의 하자는 이를 제공하는 금형의 마모로 인한 것이어서 하자 없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금형을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던 점, F에서 한정적으로 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생산설비를 갖추는 등 초기 비용이 들고 채산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F의 금형 제작비용 부담 요구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의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도 금형 제작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갑 3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금형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나 F 모두에게 위 금형은 쓸모가 없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교체비용 갑 6, 7, 39, 4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GM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M우즈베키스탄이 원고 회사에 개당 미화 12달러로 계산한 제1, 2부품 교체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도 원고 A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교체비용을 청구한 사실, GM우즈베키스탄이 원고 회사에 교체비용 미지급 시 GM우즈베키스탄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액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기록상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실제로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일부라도 교체비용을 배상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GM우즈베키스탄에 교체비용을 배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GM우즈베키스탄이 원고 회사에

교체비용을 공제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확정하거나 현실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이 현실적, 확정적으로 위 교체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 A에게 그러한 채무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는, 원고 A로부터 제1, 2부품에서 누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원고 A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금형 제작 등의 설비를 구축하여 대체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 A이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으로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원고 A이 적어도 손해의 발생에 50% 이상 기여하였으므로 그만큼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2부품의 하자 발생 후 피고 회사가 한 차례 원인을 잘못 파악하였고, 피고 회사가 다시 공급한 교체품에도 불량ى 있었으며, GM우즈베키스탄 측은 그 무렵 피고 회사나 세현피앤에이치에 하자를 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 F로부터 교체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하자 부품 공급, 불량 교체품 공급 등의 과실로 인하여 벌어진 당시 상황에서 GM우즈베키스탄 측의 거래처 변경 요구나 원고 A이 이에 따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 A의 거래처 변경 등으로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거나 원고 A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6,995,416원(= 88,710,556원 + 28,153,660원 + 30,1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7. 8.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과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지영난

판사고진흥

판사오상혁